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68
----------	-----

2019. 10. 25.(금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8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0월 17일

-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안석영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“학생근로활동”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“학생아르바이트”로 변경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,
-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### ○ 제명 변경

- 현행 :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- 개정 :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

○ 방학동안 도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“학생 근로 활동”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“학생아르바이트”로 변경하여 도민의 이해도 제고

○ 대상자의 범위를 “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의 자녀”에서 “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고등학생”으로 변경하여 대상자 범위 확대

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광영학)

○ 이 개정조례안은 학생근로활동 대상인 학생을 “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”에서 “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고등학생”으로 변경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,

○ 제명을 “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”에서 “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”로 변경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○ 다만, 현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조례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아주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한글 대체용어가 있을 경우 조례에 외래어를 쓰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## 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268 호
의 결 연 월 일	2019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9년 10월 8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10월 8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“학생근로활동”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“학생아르바이트”로 변경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,
-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 - 현행 :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  - 개정 :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
- 방학동안 도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“학생근로활동”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“학생아르바이트”로 변경하여 도민의 이해도 제고
- 대상자의 범위를 “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”에서 “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고등학생”으로 변경하여 대상자 범위 확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근로활동(이하 “근로활동”이라 한다)지원”을 “아르바이트 운영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대학생·고등학생 아르바이트(이하 “아르바이트”라 한다)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도정에 참여함으로써 도정을 이해하고, 학비 마련에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대상자) 아르바이트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(보호자를 포함한다)가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고등학생
2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

제4조 중 “근로활동은”을 “아르바이트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, 제6조, 제7조 및 제8조 중 “근로활동”을 각각 “아르바이트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부모”를 “본인이나 부 또는 모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대학생·고등학생 <u>근로활동(이하 “근로활동”이라 한다)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 1 조 ( 목 적 )----- ----- <u>아르바이트</u> <u>운영</u> ----- -----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<u>근로활동이라 함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학업을 위하여 학비를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</u>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<u>대학생 · 고등학생 아르바이트(이하 “아르바이트”라 한다)란-----도정에 참여함으로써 도정을 이해하고, 학비 마련에 도움을 받는-----</u>
제3조(대상자) <u>근로활동 대상자는 부모(보호자 포함)가 도내에 주소리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한다</u>  1. <u>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</u>  2. <u>고등학교 재학생</u>  3. <u>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</u>	제3조(대상자) <u>아르바이트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</u>  1. <u>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(보호자 포함)가 도에 주소리를 둔 대학생 및 고등학생</u>  2. <u>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</u>
제4조(운영시기) <u>근로활동은 매년 동·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</u>	제 4 조 ( 운 영 시 기 ) <u>아르바이트는</u> -----

<p>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</p>	<p>----- -----</p>
<p>제5조(신청 및 절차) ① <u>근로활동</u>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<u>부모의</u> 주소지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      략)</p>	<p>제5조(신청 및 절차) ① <u>아르바이트</u></p> <p>-----</p> <p>---<u>본인이나 부 또는 모의</u></p> <p>-----</p> <p>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선발) 도지사는 당해 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 자를 <u>근로활동</u> 대상으로 확정·선발한다.</p>	<p>제6조(선발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아르바이트</u></p> <p>-----</p>
<p>제7조(근무지) <u>근로활동</u> 학생은 도본청 및 소속기관,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</p>	<p>제7조(근무지)<u>아르바이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8조(보상금) <u>근로활동</u>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</p>	<p>제8조(보상금)<u>아르바이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9조(시행지침)</p> <p>(생   략)</p>	<p>제9조(시행지침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